

부천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6. 2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6.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99. 7.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가. 제안이유

○ 업종별 구분표의 내용 중 가정용의 사회복지시설 범위(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 육아시설, 노인복지시설)를 구체화했으며

• 업무용의 단체명칭을 변경(원호단체→국가유공자단체)하였음

○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안마사에관한규칙」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조정(욕탕 2종 → 영업용)하였음.

나. 주요골자

○ 업종별 구분표에 있어 가정용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 육아시설, 노인복지시설)하였고, 단체명칭(원호단체→국가유공자단체) 등을 변경(안 제27조제1항 별표 제3호)

○ 안마시술소 중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 이하) 이내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조정하고, 안마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는 욕탕 2종으로 조정(안 제27조제1항 별표 제3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놀이방 시설이 일반 상가건물에 있을 경우 건물 전체를 가정용으로 부과하는가?</p>	<p>○ 혼합용으로 구분하여 놀이방시설에서 사용한 양만 가정용으로 부과하며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부과함.</p>
<p>○ 안마시술소는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고용되어</p>	<p>○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자활 의욕 고취</p>

있으며 영업주는 일반인이 많음. 결국 영업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를 위하여 경기도의 지침에 의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71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제출년월일 : 1999. 7. 2

제출자 : 건설교통위원장

□ 수정이유

- 안마시술소 중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 이하) 이내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조정하고,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는 욕탕 2종으로 조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자활 의욕을 높인다고는 하나 안마시술소의 영업주는 대부분 일반인이며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고용되어 있어 결국은 영업주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함.

주요골자

○ 영업용에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이내의 안마시술소는 삭제하여 현행대로 수정

○ 목욕탕 2종에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 이하)를 초과하거나 시설규모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는 삭제하여 현행대로 수정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별표 3) 업종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별 구분표

영업용	①식품점객업소 ②공연장 ③숙박업(여인숙 제외) ④유기장, 노래방 ⑤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⑥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⑦예식장 ⑧사설학원 ⑨사진현상소 ⑩양조업 ⑪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제조업 ⑫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 제외) ⑬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⑭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⑮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율 적용) ⑯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목 욕 탕	1종	○ 일반 목욕장업
	2종	○ 특수 목욕장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 업종별 구분표	(별표 3) ○ 업종별 구분표	(별표 3) ○ 업종별 구분표
<p>영업용</p> <p>①식품점객업소 ②공연장 ③숙박업(여인숙 제외) ④유기장, 노래방 ⑤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⑥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⑦예식장 ⑧사설학원 ⑨사진현상소 ⑩양조업 ⑪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제조업 ⑫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 제외) ⑬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⑭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⑮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율 적용)</p> <p>⑯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p>	<p>.....</p> <p>.....</p> <p>.....⑥자동차정비업(카센타 포함),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운송(창고보관업 포함).....</p> <p>.....</p> <p>.....</p> <p>.....</p> <p>.....</p> <p>.....</p> <p><u>⑯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이내의</u> <u>안마시술소</u></p> <p><u>⑯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u></p>	<p>.....⑥자동차정비업(카센타 포함),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운송(창고보관업 포함).....</p> <p>.....</p> <p>.....</p> <p>.....</p> <p>.....</p> <p>.....</p> <p>.....</p>
<p>목 욕 탕</p> <p>1종 ○ 일반 목욕장업</p> <p>2종 ○ 특수 목욕장업 ○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p>	<p>.....</p> <p>○</p> <p>○ 안마사에관한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 욕실·밸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 이하)를 초과하거나 시설규모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p>	<p>○</p> <p>○</p>

[수정안 포함]

부천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별표 3 업종별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3]

업종별 구분표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 10제곱미터 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업 무 용(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업 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사설소화전 ○ 관공서, 병영,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자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임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영 업 용(03)	<p>①식품점객업소 ②공연장 ③숙박업(여인숙 제외) ④유기장, 노래방 ⑤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⑥자동차정비업(카센타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운송(창고보관업 포함) 또는 관광업 ⑦에식장 ⑧사설학원 ⑨사진현상소 ⑩양조업 ⑪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제조업 ⑫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⑬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 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⑭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⑮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율 적용) ⑯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p>		
목 욕 탕	1종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목욕장업 	
	2종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목욕장업 ○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